

[GH 매입임대 신청 시 유의사항]

동일 순위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		
공급신청서 상의 배점 항목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,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④, ⑤ 항목의 합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. 제4항과 제5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동일할 경우 해당 시·군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(말소한 경우 재전입일 기준)		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
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·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⇒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만을 의미하며, 중간에 타지자체로 전출 시 신청 지자체로 재전입 이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기간만 인정 가능	가. 5년 이상 나. 3년 이상 5년 미만 다. 3년 미만	3점 2점 1점
② 부양가족의 수 (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) ⇒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★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동일한 세대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포함(단, 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) *세대구성원으로는 인정 불가	가. 3인 이상 나. 2인 다. 1인	3점 2점 1점
* 별도 가점 ※ 미성년자녀 : 「민법」상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 ※ 중증장애인 - 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」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⇒ 65세 이상의 배우자는 가점 대상 아님	-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미성년 자녀 2명 미성년 자녀 1명 -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(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,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 - 중증장애인(신청인 포함)	3점 2점 1점 1점 1점
③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(인정회차 기준,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) ⇒ 발급기준일 : 2025. 3. 31. ⇒ 주택관리번호 : 2025980044 기재된 것만 인정 ⇒ 신청인(A)이 아닌 배우자(B) 명의 청약 인정 불가	가. 24회 이상 납입 나.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.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	3점 2점 1점
④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[별지 5]에 따른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가 교부된 경우 ⇒ 읍면동에서 발급	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교부 여부	2점
⑤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*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, 부양의무자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)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배제	가. 80% 이상 나. 65% 이상 80%미만 다. 50% 이상 65%미만 라. 30% 이상 50%미만	5점 4점 3점 2점

※ 가점(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) 관련 안내

기준주택 매입임대 추가정보 배점표 입력

* 모집공고구분 * 시군구 전입일자 2023-04-05

* 모집공고

* 주택신청유형 1인~2인 가구용 3인~4인 가구용 5인 이상 가구용 그룹홈용

주택 및 자산현황 무주택 자산 및 자동차

* 신정순위

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등록중 고부자

아동복지시설퇴소자 저소득고령자

2순위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중 고부자

3순위 월평균소득 70%이하인 자

우선순위 유공자 주거지원시급가구

투정관리대상지역거주자 기존주택거주자

전세임대퇴거자 거주불가능 주택거주자

예비순위 2순위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중 고부자

신청자격 부모임대퇴거자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폭행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병실패자 노숙인 부랑인복지시설 거주자

태아의 수 0 인

* 임차료 원 계산

- ①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후 행복이음 상에 임차료 금액 기재 시,
[(보증금 환산액(연4%) + 임차료) - 주거급여 지급액]을 적용하여 입력

주거유형	보증금	임차료	주거급여 지급액	행복이음 반영
보증부 월세	10,000,000	300,000	255,000	78,333
	보증금 환산액 : 33,333원 [(10,000,000원 * 4%) / 12개월] 반영 → (33,333원 + 300,000원) - 255,000원 = 78,333원 반영			
월세	-	300,000	-	300,000
전세	45,000,000	-	-	150,000
	보증금 환산액 : 150,000원 [(45,000,000원 * 4%) / 12개월] 반영			
전세	45,000,000	-	150,000	0

- 배점표 상 ⑤번(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)은 읍면동에서 입력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, 재산 조사 후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자동 계산됨
-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는 주거급여 직권 차감 후 임차료란에 수기입력 후 저장 필요
- 행복이음 배점표와 엑셀 동일하게 입력 필요